

고성군 지하수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20호
------------	--------

제출연월일 : 2010. 1. 4.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지하수법」,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시행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안제3조)
- 나. 취수량 제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오염, 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제5조~안제10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제11조~안제19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681호(2009. 8. 19 ~ 2009. 9. 9)
- 의견제출사항 : 없음

나.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41조제1항,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0조제3항,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합의 : 없음

마. 규제심사 : 없음

4.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지하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동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 내부케이싱(지표하부보호벽)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 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제5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지하수업무담당부서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영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13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부과권자는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부과권자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부과권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 행위 조사서

1. 대상자

- 가. 법인(상호)명 :
- 나. 대표자 :
- 다. 법인 번호 :
- 라. 생년월일 :
- 마. 소재지 :
- 바. 연락처 : (전화) (팩스)

2. 위반 내용

3. 위반 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 일시 :

나. 위반 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성군청 ○○○○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제54조에 따른 감치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불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				
체납 과태료 금액	금 원 (₩)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불임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매 200○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처분 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호	
	고지 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 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고성군수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 내역	고지 일자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일자		이의 제기 사유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